

여성의 '목소리'로 구축하는
젠더 유산(Gender Heritage)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한혜인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머리말

일본정부는 ‘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관련한 국가의 입장을 담화 및 각의 결정의 방법으로 공식화해왔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해서는 1993년 고노(河野)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일본군관헌의 포괄적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계승해 왔다. 그러나, 2007년 아베(安倍)는 1993년 정부조사의 1차 사료 속에는 “군과 관헌에 의해 강제연행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술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각의결정을 했다. 아베는 1차 자료, 즉, 일본군관헌이 생산한 공문서라는 가장 좁은 범위의 기록을 앞세워 일본군 ‘위안부’의 실체를 가두면서,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를 과거에 가두어, 제국의 법과 인식에서 판단하면서 국가의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국의 공적 질서는 ‘위안부’ 피해를 기록하지 않는다. 다만, 권력의 시각에서 인정해야 할 사실만을 인정해 왔다. 한국의 국가가 만드는 공공기억 역시 마찬가지이다. 조금 복잡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의 공적기억은 제국협력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민족의 수난’이라는 피해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으로 ‘민족애’를 불러일으켜 ‘반일’을 공공화해 간 건 사실이다. 국가가 피해자를 ‘민족’이라는 틀 속으로 일원화해 주는 것으로, 피해자로 지칭되는 국민은 기꺼이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각 국가가 지키려하는 공적기억에 ‘기여’하게 된다. 한국의 공적 질서가 ‘위안부’ 피해에 관해서는 일본에 저항하는 것 같지만, 공적기억 속에서는 결국은 국가=기득권=남성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선상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라는 국가로 대변되는 제국과 그 제국세력이 구축한 공적질서와 맞서 싸우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기억을 복원하고 자각하면서 새롭게 기록해 가는 역사이다. 제국의 공문서로만 해석할 수 있는 공적기록의 역사, 고착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던 피해자의 기억의 ‘자각’과 ‘변화’의 기록이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구축하는 근거는 공문서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각과 변화가 이끌어 내는 수많은 기록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기록들이 구조화된 권력적 ‘시각’이 아닌, 실제화된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그 ‘목소리’의 구조화 방식은 권력의 방식을 차용하면서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구조화의 근거가 되는 근거, 사료, 유산의 범주는 지금의 공적범주를 넘어서야 한다. 공적으로 소거되었던 피해자의 실체, 기억, 증언을 보다 범주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젠더 유산’으로의 범주화를 제안하고 싶다.¹⁾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가 어떻게 발굴되고 통용되고, 인식되고 기록되었는가를 살피면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이 20세기와 21세기를 거치는 대표적인 ‘젠더 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을 논해 보고자 한다.

1) 현재 학계에서 Gender Heritage의 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여성이 생산한 유산, 여성을 그린 유산의 소외(정치성)와 전시(착목)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참고 저서로는, Wera Grahn, Ross J. Wilson, Gender and Heritage: Performance, Place and Politics, 2018, Anna Reading, Making Feminist Heritage Work: Gender and Heritage, Laurajane, S. Heritage, gender and identity

‘위안부’를 바라보는 두 개의 어긋난 시선

언제부터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가 인식되었을까? 보통 1991년 8월14일 피해자 김학순의 공개증언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한국과 일본사회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실태가 꾸준히 언급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는 해방 직후부터, 신문 등 미디어에서 삼일절이나 광복절을 전후로 일본 식민지 피해로 전쟁에 끌려간 군인, 군속, 노동자, 정신대 피해를 언급하면서, 정신대를 일본 군대에 끌려가 땀을 짓을 당한 위안부도 포함해 지칭했다.²⁾

1963년 8월14일 경향신문에 실린 「광복전야, 일제의 발악. 8.15에 생각나는 말들」이라는 기사에서 정신대를 “속칭 여자공출”, “나이찬 처녀들을 전선으로 끌고 가 위안부로 삼았다. 일제 병사에 인신을 공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삽화가 <그림 1>이다. 일본 군인에 의해 보쌌 듯 끌려가는 ‘처녀’, 무기력하게 울고 있는 아버지가 표현되어 있다. 삽화가 군인, 군속의 피해가 아닌 ‘처녀공출’로 대표화해서 ‘민족’의 피해를 극단적으로 표현하였다. 1982년 한일 간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역시, ‘위안부’ 문제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제기되었다.³⁾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민족의 수난, 식민지 피해라는 관점에서의 ‘위안부’ 피해는 군인, 군속, 노무자 및 정신대와 구분하지 않는, 제도적 피해, 가시화된 피해, 공공의 기억으로 인지되었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는 ‘위안부’의 존재가 공공의 기억으로 표면화되지 않았다. 사적 기록에서 ‘소문’과 같이 확산되었다. 일본에서는 병사의 전쟁체험기가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많이 생산되었다. 이 체험기 속에서는 병사 자신이 겪은 전쟁의 참혹함과 함께 ‘위안부’가 회고되기는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남성을 ‘위로’하는 대상으로 그려졌다. 이 체험담을 근거로 창작되는 재현물에서는 보다 더 노골적으로 성(性)이 강조되었다. 최초의 작품이 1965년 다무라 다이지로(田



그림1 '일제는 처녀공출까지 해갔다', 경향신문, 1963.8.14

2) 이에 대한 근거자료, 실례를 들어 설명한 논문은 다음을 참고 바란다. 한혜인,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 종합적 연구』, 2015.

3) 한혜인, 「우리가 잊은 할머니들.. 국내 첫 커밍아웃 이남님, 타이에서 가족 찾은 노수복」, 2015.8.7.한겨레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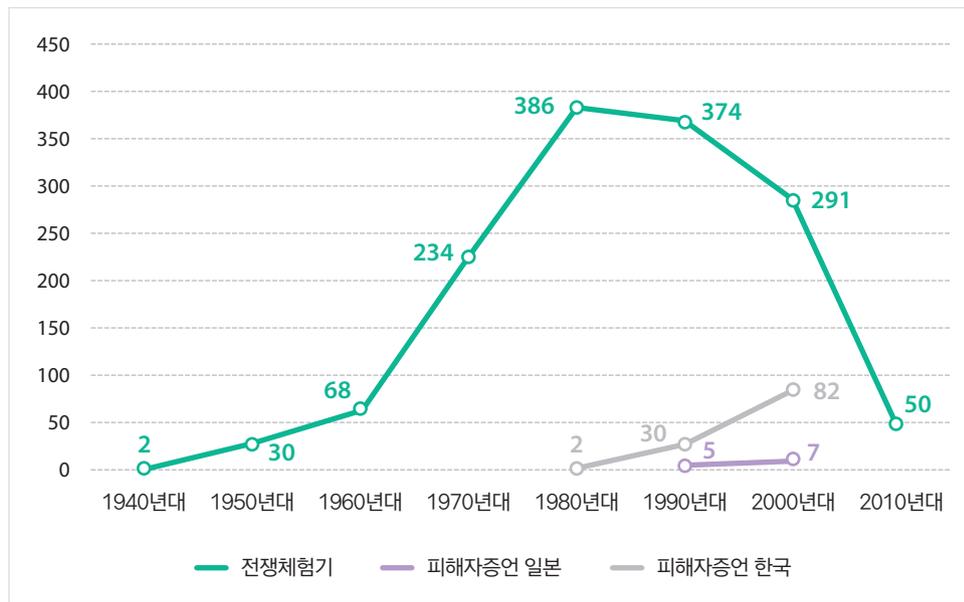


그림2 남성의 전쟁체험기, 피해자 증언생산 추이

村泰次郎의 『춘부전(春婦傳)』이다. 원작(1950년)에서는 ‘위안부’가 조선인이었는데, 연합군 총사령부(GHQ : General Headquarters)의 검열로 일본인 위안부로 바꾸었다. 일본의 인식 속에는 민족적 차별까지 존재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가 증언한 것은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는 하지만, 절대적 소수였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보는 남성들의 전쟁체험기에서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진 모습으로 각인, 고착화되어 갔다. 한국에서도 ‘위안부’가 비공식적 대중의 이미지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춘부전』의 영향을 받아, 1974년과 1985년에 「여자정신대」라는 제목으로 성(性)이 부각되는 스토리로 재현되었다.⁴⁾ 한국에서는 삼일절과 광복절과 같이 역사의 공적기억을 만들어 갈 때는 군인, 군속과 같이 남성의 피해와 더불어 제도적이고 가시화된 피해자로, 식민지 피해를 구체화하는데 사용되는 동시에, 비제도적 비공식적 기억에서는 식민지 피해라는 역사성이 소거되고, 남성의 성의 대상으로 향유되는 존재

로 그려졌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위안부’의 존재는 공적 기억에서는 식민지 피해의 구체화된 표상으로 인식되고, 대중의 인식에서는 ‘성’의 문제가 포함된 문제로 은폐되고 터부시되며 침묵하게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제국이 사회적 인식 속에서는 신민의 신분을 얻지 못했던 일본의 추업여성들에게, “황군을 위안하는 신민”이라고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위안부’로의 희생을 강요했던 것과 같은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한국은 공적기억에서는 ‘민족의 수난’이라는 자격을 주어 남성과 같이 호출하지만, 여성의 피해라는 측면에서는 개별화하고 은폐했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했다. 1982년 9월 여성동아에 ‘독점수기 : 나는 일본군의 정신대였다/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라는 제목으로 여성인 ‘내’가 직접 피해를 고발한 것이다. 이어 1984년에는 배옥수, 노수복이 공개증언을 했다.⁵⁾

4) 한혜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화 콘텐츠 해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및 향후과제 종합보고서 5』, 2017년, 여성가족부.

5) 한혜인, 「우리가 잊은 할머니들..국내 첫 커밍아웃 이남님, 타이에서 가족 찾은 노수복」, 2015.8.7.한겨레 21.



그림3 '1974년 『여자정신대』

그러나 이들의 공개증언은 공공화되지 못했다. 모두 여성지를 통해 소개되어 사회문제론까지 인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노수복의 경우,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타이에서 살다가 가족을 찾는 이유로 신문과 미디어에서 보도를 하지만 그것은 '여성의 피해'로서가 아니라, '민족의 수난'으로 그려졌다. 1980년대에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도발에 의한 공적 역사의 분노에서 시작되었지만, 소비되는 방식은 여성지에서 취급하는, 성의 문제를 포함한 사적인 가십처럼 취급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공적 역사를 만들 때는 '위안부' 피해자를 남성(권력)의 시선으로 일본에 대항하는 '민족애'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가시화했지만, 여성의 피해에는 일본에서와 같이 성의 도구로, 은폐되어야 하는 것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어긋난 시선이 개선된 것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의 공개증언이다. 이 공개증언이 앞선 이남님, 노수복, 배옥수 등과 달랐던 것은, 1990년대의 여성인권인식의 신장이 그 바탕에 있지만, 공개증언의 장소가 여성지가 아닌, 신문과 미디어를 통해서였다는 것과 개인의 피해사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의 차원에서 이야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김학순 스스로가 일본을 상대로 '재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점이다. 즉, 법정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⁶⁾

그 동안 남성의 시각에서 거론된 사적 여성의 기억을, 피해를 자각한 김학순의 목소리로 공공의 기억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김학순 증언의 의의가 있다.

김학순 등 피해자들의 증언은 대중의 인식도 바꾸었다. 과거 속에서만 존재하던 "매춘부"의 이미지가 실체화된 "피해자"의 이미지로 바뀌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이야기하고 세상으로 나오자, 성적대상으로서의 '위안부'가 고발자 '위안부'로 실체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다큐멘터리, 르포르타주 등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기 시작했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재현물 속에서 성적요소가 제거되었고, 여성의 시각, 인권회복의 시각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의 시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했다.⁷⁾

6) "지금도 '일장기' 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요즘도 일본이 중군 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본을 상대로 재판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군 위안부 참상 알리겠다/국내거주자 중 첫 과거폭로 김학순씨」, 한겨레신문, 1991.8.15

7) 한혜인, 앞의 보고서, 2017.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의 일부에서는 ‘위안부’를 둘러싼 어긋난 시선이 공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2008년 설립 예정이었던 서대문형무소에 위안부 박물관 설립계획이 독립운동가 단체들에 의해 무산되는 과정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공적 사실의 발견

1. 일본정부조사 사료발굴 현황과 의의

김학순의 공개증언 이후,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문제를 한 일 간의 문제로 공공화 했다. 1993년 8월 4일 소위 고노담화(慰安婦関係調査結果発表に關する河野内閣官房長官談話)가 나오기까지 일본은 두 차례(실질적으로는 세차례)에 걸쳐 자료조사를 행했다. 첫 번째로 1991년 12월부터 1992년 6월까지 조사하여 <내각관방 내각외정 심의실>에서 「조선 반도출신 소위 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1992년 7월 6일 발표했다. 조사대상기관은 경찰청, 방위청,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등 6개 기관에서 방위청 70건, 외무성 52건, 문부성 1건, 후생성 4건으로 총 127건이 발견되었다.⁸⁾

이 조사결과로 얻어진 결론은, 군 당국이 위안시설을 필요로 했었다는 점, 위안부 모집 단속에 관하여 위안부 모집자의 인선을 적절히 해야 한다는 문건이 군내부에서 나왔다는 점, 위안소 건조, 증간에 관해서 군인이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이 나왔다는 점, 위안소 경영 감독에 관해서 부대에서 위안소 규정을 작성했다는 점, 위안소 위안부 관련 위생관련해서 군의관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점, 위안소 관계자에게도 항상 군의 증명서로 도항시킬 필요가 있다는 문서가 발견된 점, 그 외에도 선박 수송 등에 관해 군 및 외무성이 전보 등

을 냈다는 점 등을 들어, “소위 중군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발표했다.⁹⁾

일본정부는 한국정부 및 일본 의회로부터 조사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1993년 두 번에 걸쳐 2차 조사를 했다. 1차 조사기관인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 외무성, 후생성, 노동성을 비롯하여 국립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미국국립공문서관을 비롯한 기관과 관계자로부터의 청취조사, 국내외의 문서 및 출판물(한국정부 작성 조사보고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관계단체가 작성한 위안부 증언집) 등을 섭렵하고, 미국 담당관을 파견하여 미국공문서 조사, 오키나와 현지조사 등을 한 후,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에서 「소위중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를 발표했다.¹⁰⁾

이 조사결과로 발굴된 자료는 방위청 48건, 법무성 2건, 외무성 43건, 문부성 1건, 국립공문서관 30건, 국회도서관 17건, 미국국립공문서관 19건 등 총 160건이 발표되었다. 이 중 국립공문서관 자료는 군관련자료, 경찰월보, 조선총독부관련 자료, 후생성 관련 자료들이었다. 국회도서관 자료는 ATIS, 즉 연합군심문조서, 조사보고 문건 등이었고, 미국국립공문서관 자료도 심문조서, 전쟁정보국 관계문서 등이었다. 1차 조사대상이었던 기관에서 추가로 발굴된 자료로는 경찰청 2건, 방위청 47건, 국립공문서관에서 2건, 이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된 2건은 각의결정된 회의 문건이다. 국립국회도서관에서 1건, 후생성에서 1건이었다. 이후 영국국립공문서관에서는 4건이 발굴되어 2차 조사에서 총 57건이 첨가되었다. 국립국회도서관 발굴 자료는 1차 때와 같이 ATIS문건, 즉 연합군 문건이었다. 영국국립공문서관에서 발굴된 자료는 연합군 노획문서로, 그 내용은 일본군 주둔군사령부, 수

8)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の調査結果について」1992년 7월 6일/내각관방실, 『内閣官房慰安婦調査』, 관방청 소장자료, 小林久公 제공.

9) 内閣官房内閣外政審議室, 1993년 8월 4일,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ついて」, 내각관방실, 『内閣官房慰安婦調査』, 관방청 소장자료, 小林久公 제공

10) 위의 사료

송사령부 관련 자료이다. 총 521건에 이른다. 일본정부조사에서 발굴한 사료의 내용을 담당부처와 '위안부' 관련 정책사항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사료의 분류는 필자의 판단에 의한 분류라는 점을 밝혀 둔다.)

<표> 일본정부 조사 위안부·위안소 관련 자료 현황¹¹⁾

분류(사료의내용)	기관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1947	기타(연도)
위안소 설치에 관한 건	방위청①							2	1	1								
위안부 모집에 관련한 단속 건	방위청①							1										
	외무성①							1	2									
	경찰청②-2							2										
위안시설의 건축 확대에 관한 건	방위청①													4	5			
위안소경영 감독에 관한 건	방위청①							4	2		15	7	4	14				
	방위청②-1							4	2	1	1	19	2	4	1			
	외무성①					1	3											
	문부성①													8				1(1984)
위안소 위안부의 위생관리에 관한 건	방위청①							3	1	3		10	2	3				
	외무성①				1		2											
	문부성①													8				1(1984)
위안소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건/ 통계표/도항	방위청①											2						
	외무성①					1	5	44	10	2	2	2						불명 4
	외무성②-1						1	29	6	4	2							불명 1
	국립공문서관②-1					1	1											
그 외 위안소 위안부에 관한 기술	방위청①				1	1	2	7	7	1	11	12	1	2	2	1		
	방위청②-1							1	2	1	1	7	1	2	1			
	방위청②-2								2		2	7	14	14	8			
	후생성①														1	1	1	
	문부성②-1													1				
	국립공문서관②-1	1	9	2	1	1	1		2		1	2	2	2	1			불명 2
	국립공문서관②-2													2				
	국립국회도서관②-1														2			
	국립국회도서관②-2												1					
영국국립공문서관②-2												3		1				
명부조사	후생성②-2																	(1992)
위안소 관련 사건	법무성②-1															1	1	
	국립국회도서관②-1												13	1				불명 1
	미국국회도서관②-1												5	5	5			불명 3
계		1	9	2	2	3	6	37	94	23	37	70	50	70	27	4	2	14

* 출처 : 내각관방실, 『内閣官房慰安婦調査』, 관방청 소장자료, 小林久公 제공.

* ① : 제1차 조사, ②-1 : 제2차 조사 첫 번째 발굴자료, ②-2 : 2차 조사 두 번째 조사.

* 분류는 1차 조사 보고서의 일본 정부 측 분류를 따랐다. 2차 조사에서는 분류 없이 보고되고 있다. 2차 조사 결과는 사료의 성격에 맞추어 1차 보고서 방식으로 정리했다. 단, 위안소 관계자의 신분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건은 도항관련, 통계관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명부조사와 위안소 관련사건 항목은 덧붙인 분류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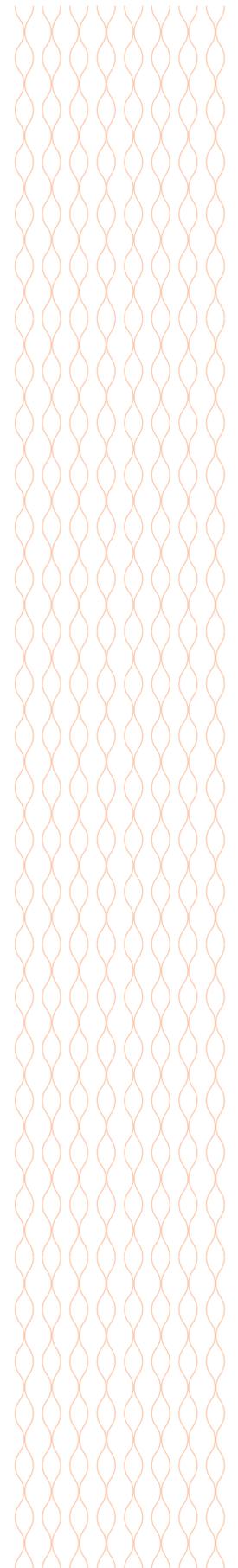
11) 본 표는 Shincheol, Lee, Hyein, Han, 'Comfort Women: A Focus on Recent Findings from Korea and China,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ume 21, 2015 - Issue 1에 실린 것을 재인용 했다.

이 자료들을 통해 1993년 8월 4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일본 내각관방 내각외정 심의실은 발표했다.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p>1</p> <p>위안소 설치 경위</p> <hr/> <p>위안소 개설은 군당국의 요청</p>	<p>2</p> <p>위안소가 설치된 시기</p> <hr/> <p>1932년 상해사변 발발 시 위안소 설치 자료 존재. 그 이후에 확산</p>	<p>3</p> <p>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p> <hr/> <p>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미얀마, 뉴기니아, 홍콩, 마카오 및 볼령 인도네시아.</p>	<p>4</p> <p>위안소의 총수</p> <hr/> <p>위안소 개설은 군당국의 요청</p>
<p>5</p> <p>위안부의 출신지</p> <hr/> <p>일본, 조선반도,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네덜란드. 일본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 출신자가 많음.</p>	<p>6</p> <p>위안소의 경영 및 관리</p> <hr/> <p>구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경영한 케이스도 있다. 민간업자가 경영한 경우에도 일본군이 개설허가, 위안소 시설정비, 위안소 규정 등 구 일본군은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에 직접 관여.</p>	<p>7</p> <p>위안부의 모집</p> <hr/> <p>군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가 담당. 업자가 감언 등 본인 의향에 반해 모집한 케이스가 많고 관련 등이 직접 가담한 케이스도 보인다.</p>	<p>8</p> <p>위안소 수송</p> <hr/> <p>일본군이 특별하게 군속에 준한 취급으로 도향신청을 허가, 일본정부는 신분증명서 등 발급, 군의 선박과 차량 이용, 패배 후 귀환시키지 않은 경우도 많음.</p>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의 결과보고서는 위안소 제도 및 위안부 동원에 대하여 각각의 사항에 따라 직접적인 사료를 통해 군의 관여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위의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8월 4일 고노담화를 발표하게 되는데, 고노담화는 내각관방 내각외정심의실 결과보고서의 위안부 모집에 “군관헌이 직접 개입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빼고, 포괄적으로 위안소 제도에 군관헌의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궁극적으로 고노담화에서는 사실을 축소하기는 했지만, 이 정부조사를 통해 발굴된 사료로 발표한 것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관헌이 직접 개입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구체적 내용을 빼고, 포괄적으로 위안소 제도에
군관헌의 개입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공적 사실의 '의도적 무시'

2. 일본정부조사 이후 발굴된 사료의 현황과 의의

정부조사 이후에도 자료발굴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이 새롭게 발굴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그대로 직시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2005년 발굴된 나가이 카즈(永井和)의 <야전주보규정개정(1937年9月29日制定の陸達第48号「野戦酒保規程改正」)>은 새로운 중요한 사실을 적시하는 신발굴 자료이다. 나가이 카즈는 이 사료를 통해 위안소 자체가 '군대에 속해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일본군관헌의 개입은 당연한 사실이므로, 현재 행해지는 강제연행에 군관헌의 직간접 개입의 유무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¹²⁾

최근 중국에서 발굴된다는 자료는 크게 나누면 점령지 정부(상하이특별시, 난징특별시, 천진특별시 등)자료와 일본관동군 자료로 나눌 수 있다. 길림성 당안관, 헤이룽장성 당안관, 내몽고당안관, 친황다오 당안관, 랴오닝성 당안관에서 발굴되는 자료는 관동군(헌병대 포함)사료가 주이고, 이는 일본에서 발굴되는 자료와 내용적으로는 중복되는 자료가 대부분이다. 중국 지린성당안관에서 발굴되고 있는 관동군헌병대 자료군은 일본정부 발굴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중일지>, <통신문서> 등과 같은 자료군으로 내용이 조금 다르

지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은 없다. 일본정부 조사 이후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피해자 재판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여 WAM에서 목록화하고 있는 자료는 466건에 이른다.¹³⁾

wam의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로는 한국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11건의 사료 중 5건, 난징시당안관 소장 34건, 상하이시 당안관 40건, 난징 제2역사당안관 소장 4건¹⁴⁾ 그리고 2016년 5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가 등재신청한 <일본군'위안부'의 목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 역사당안관, 길림성 당안관, 헤이룽장성 당안관, 내몽고 당안관, 친황다오 당안관, 랴오닝성 당안관에서 49건의 공문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일본정부 조사 이후에 공문서는 598건에 달한다.

이들 공문서 중 일본정부조사 자료와는 다른 새로운 자료로는 타이완총독부 문서군, 전범재판군(네덜란드 NIOD, 미국 NARA, 중국 중앙역사당안관), 상하이, 난징 등 중국 점령정부가 생산한 자료 등이 있다. 타이완총독부 문서군은 '위안부' 동원 및 위안소 개축에 식민지 기관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¹⁵⁾ 전범재판군 사료에는 일본군의 강제연행 개입, '위안부'의 가혹행위 등을 알리는 사료가 포함되어 있다.

12) 永井和, 「陸軍慰安所の創設と慰安婦募集に関する一考察」, 『二十世紀研究』 1、2000, 이 논문은 위의 <야전주보규정개정에 관한 건>이 발견된 후 가필해서 2005년에 다시 인터넷상에 발표했다.

13) WAM(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박물관으로 2005년부터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민간단체로, 관련목록은 WAM에서 공개하고 있다. <https://wam-peace.org/ianfu-koubunsho/>

14) 식민과냉전연구회,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이신철, 윤명숙, 윤경순, 한혜인), <한중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상하이 난징지역 위안부 관련 자료조사를 위한 출장보고서>2013.8.7.-14

15) 최종길, 「타이완척식주식회사자료를 통해 본 일본군 위안소 설치와 운영」,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일본연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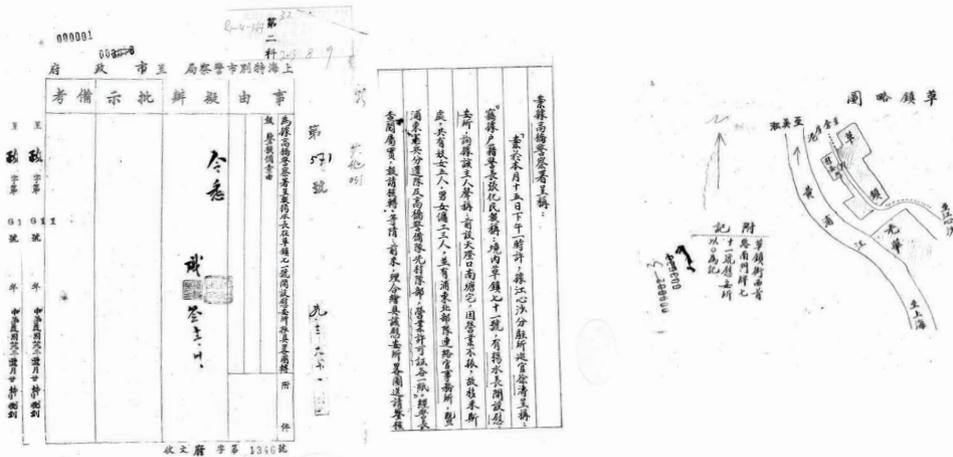


그림4 상하이시 당안관 보관 위안부 관련 사료

전시(戰時)기의 상하이시와 난징시정부 문서로 중국어로 된 문건이다. 상하이시 당안관에서 발굴된 자료는 상하이특별시정부와 경찰국 문서로, 위안소 설치, 위안소조합 등 위안소 관리, 위안부(예창기)에 관한 자료가 핵심자료이다. 특히 위안소 설치에 관련한 자료는 일본군이 위안소 개설에 상하이특별시정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하이, 즉 점령지(조계지 포함)에서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 위안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이는 점령지에서만 발굴될 수 있는 자료로, 일본측 자료가 이야기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 일본군이 점령 직후, 공창제가 없던 상하이에서 사창제도를 이용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창제도의 틀 속에서 중국인이 일본군위안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위의 그림4의 사료 내용). 일본군의 허가를 받은 중국인 업자는 그 허가서와 기녀명부, 위안소 약도 등을 가지고 상하이특별시 경찰과 시정부에 제출하여 다시 허가를 받는다. 이 사료 속에는 15세 밖에 안된 여성을 '위안부'로 고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위안소를 개설하는 과정에 일본인이 중국인 여성을 강제연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었다.¹⁶⁾

일본 정부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굴된 공문서 자료로도 일본 군관헌, 총독부 등 점령지 행정기관이 모두 관여하여, 제도적으로 혹은 폭력적으로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식민지 전장에서 '위안부'로 삼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모두 증명되어 있다. 다만, 일본의 일부세력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따름이다.

16) 한혜인, '중일전쟁기 상하이지역 위안소 설립 및 관리제도의 변화', 한중일학술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와 연대, 2014.2.8.-2.9. 중국 상하이사범대학교.

은폐의 기술

일본의 공공담론의 구조

일본에서 '위안부'에 대한 공공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는 연구성과와 담론 형성의 경향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공 담론의 장으로 나온 것은 역시 1991년 김학순 피해자의 공개증언 이후이다.

필자의 조사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글이 1990년 이후 2014년까지 1,552건, 그 이외에도 단행본으로는 446권(자료집 포함)이 생산되었다.¹⁷⁾ 다른 비슷한 역사적 사항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단일주제로는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고 볼 수 있다. '위안부' 관련 글 1,552건을 (1) 진보적 주장(보라색) (2) 보수적 주장(파란색) (3) 역사적 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한 논문 및 잡지(빨간색)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진보적 주장과 보수적 주장으로 나눈 기준은 첫째, 각각의 글의 논조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① 일본군 '위안부' 존재에 대한 진위 논란 ② 강제성에 대한 인식 ③ 증언에 대한 진위 논란 ④ 공창제와의 연관성(특히, 자발적 매춘행위로 해석)을 기준으로 구분했다. 단, 공창제에 관련한 것은 공창제와 연결했다는 그 사실 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면서 자발적 매춘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수적 견해로 보았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1,552건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

진보적 주장과 보수적 주장으로 나눈 기준

①

일본군 '위안부' 존재에 대한 진위 논란

②

강제성에 대한 인식

③

증언에 대한 진위 논란

④

공창제와의 연관성
(특히, 자발적 매춘행위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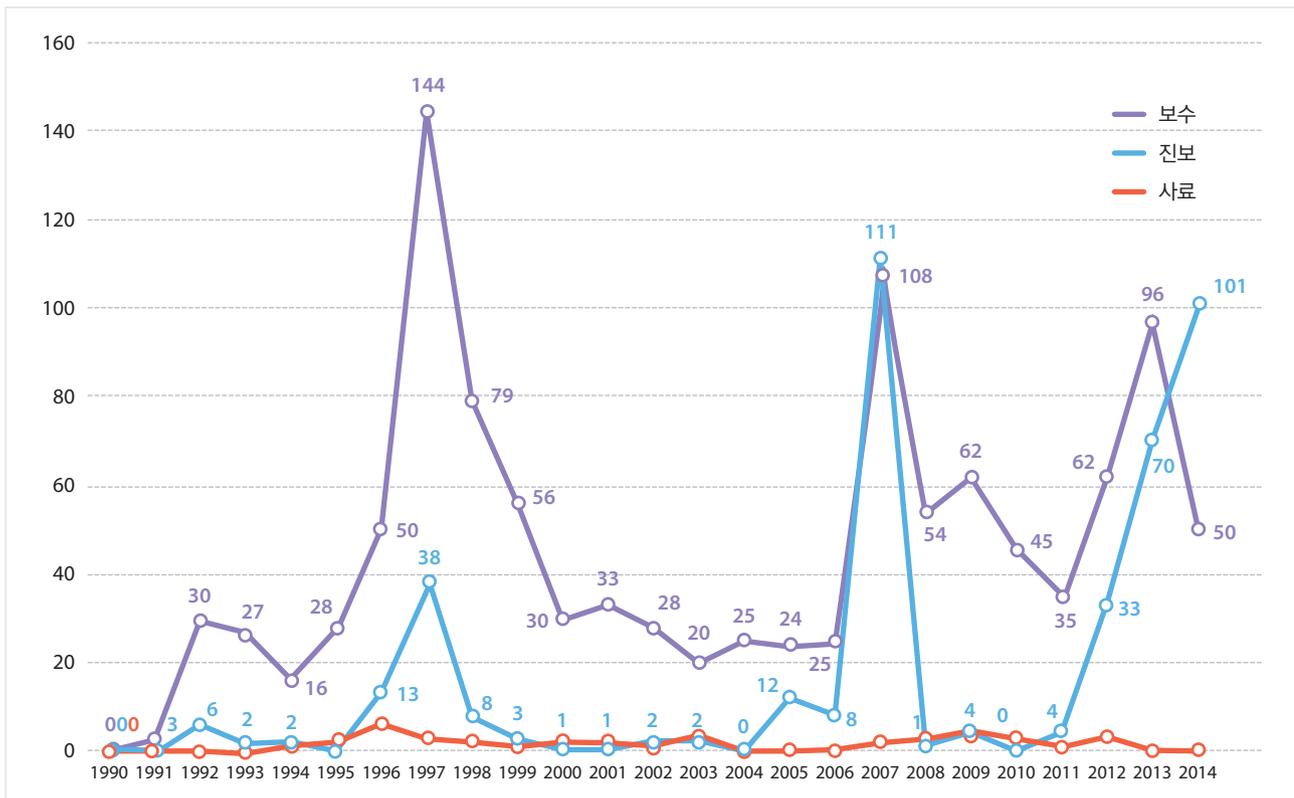


그림5 1990년대 이후 일본군 '위안부'의 담론형성 추이

17) CiNii Articles(<http://ci.nii.ac.jp/>)와 일본 국회도서관(<http://www.ndl.go.jp/>)에서 '위안부' '위안소' 로 검색하여 중복을 제외한 글 및 단행본 총수.(2014년 현재)

이 그래프를 잘 관찰하면 빨간 선은 (3) 역사적 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한 논문에 해당하는데, 이는 1990년 이후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일본정부조사 시 발굴한 사료로 발표된 이래,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이미 다 밝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의 수많은 일본에서의 담론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위안부 관련 글들은 1991년 김학순의 공개증언 이후, 그해 11월 김학순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후부터 생산되었다. 그래서 공공 공간에서의 담론의 구도는 재판의 구도 즉, 피고와 원고의 입장에서, '범죄사실이 무엇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각 입장에서 주장하는 방법으로 구축되었다. 초기 연구가 『월간 사회당』 과 『법학세미나』 가 주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원고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안부' 피해의 실태와 정도, 가해의 주체, 책임의 범주, 보상과 배상 문제가 문제의식으로 자리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그 피해의 전적 책임은 '국가'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연구와 담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1990년대 초반부터 일본 진보적 입장의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책임'으로 정의하고, 그 범죄 실상을 밝히는 연구를 시작했다.¹⁸⁾ 이 연구의 계보는 전쟁범죄의 '인도에 반한 죄'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¹⁹⁾ 시스템적 범죄보다는 개별적으로 '얼마나 가혹한 행위'를 당했는가, 불법적 요소가 무엇인가가 주 증명대상이 되었다.²⁰⁾ 그 결과 식민지의 제도적 강제가 왜소화되었다.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1997년 자민당 의원의 교과서 위안부 기술 문제 제기, 이시하라(石原) 관방부장관이 고노담화의 강제성은 사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의 청취조사를 통해 인정된 것이라고 발표해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큰 논란거리가 되어 많은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진보적 입장에 반해, 보수파는 그 대응논리로, '위안부' 제도는 '나쁜지만, 합법'이라는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제연행'의 유무문제, '군관헌의 개입'문제, '증언의 진위' 문제로 끌고 갔다.²¹⁾ 피고, 즉 일본 제국의 제도적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입장에서, 불

18) 竹村泰子, 「日本の戦後責任と従軍慰安婦問題」に関する私たちの提案(1991年11月16日・「日本の戦後責任と従軍慰安婦問題」シンポジウム(東京), 月刊社会党(435), p85-89, 1991-12, 文化評論, 従軍慰安婦問題と戦争責任<特集>, 65-102, 1992-04, 福島瑞穂, 従軍慰安婦訴訟(いま,問われる日本の戦後補償<特集>)-(補償を求める人びと), 法学セミナー(452), p65-67, 1992-08

19) 福島瑞穂, 国際的に裁かれる「人道に対する罪」-「従軍慰安婦裁判」の現状と課題(戦後補償-来年こそ実現の1歩を<特集>, 月刊社会党(448), p51-56, 1992-12. 阿部 浩己, 「慰安婦」問題と国際法, 専修大学社会科学研究所月報(371), p27-41, 1994-05.

20) 佐藤健生, ドイツの戦後補償に学ぶ- (過去の克服) -8日独の「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1-ドイツの「強制売春」問題と日本の「従軍慰安婦」問題,

21) 加藤正夫, 「事実無根の慰安婦狩り証言」, 現代코리아(325), p45-55, 1992-10), 上杉 千年, 総括・従軍慰安婦奴隷狩りの「作り話」, 自由34(9), p10-30, 1992-09. 秦郁彦, 「慰安婦狩り」証言 検証第3弾-ドイツの従軍慰安婦問題, 諸君24(9), p132-141, 1992-09,

법행위를 '위안부 제도' 전체가 아닌 동원 시의 '강제연행'으로 축소해 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의 주류 사학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よしのり)와 후지오카 시노부(藤岡信夫) 등의 역사수정주의자들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피해자 증언을 '허위'라고 폄하하면서 강제연행을 한 '실증적 증거'를 요구했다.²²⁾ 앞의 그래프에서 2014년의 기점에 보수적 담론이 많이 생산된 이유에는 아사히신문이 일본의 군관헌이 강제연행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증언보도와 정신대 용어 사용에 대한 오보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결국 담론구조 속에서는 진보적 주장에서는 일본국가 책임의 원인인 가혹행위의 한 축에서 '강제 매춘 및 강제 연행'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강제연행' 부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리로 대응했다.²³⁾ 그러는 사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동원에서의 '강제연행'의 유무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편승해 2007년 아베정권이 들어서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했다는 문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해서, 보수와 진보는 다시 '위안부에 대한 강제연행' 유무를 증명하는 논란에 빠져들었다. 이 논란은 사료를 통해 밝혀진 일본군관헌의 직접적 관여라는 커다란 범죄사실을 '직접적 강제연행' 범죄로 축소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료가 없음을 앞세워 실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국가 책임의 원인인 가혹행위의 한 축에서 '강제 매춘 및 강제 연행'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강제연행' 부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리로 대응했다.

기억에서 기록으로

여성이 복원하는 기록

김학순의 공개증언을 계기로, 네덜란드,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중국, 북한 그리고 피해자들이 공개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공개증언과 더불어,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규명 등 활동을 해가면서 상처를 치유하면서, 그동안 은폐되어 왔던 사실들을 '기억'해내고, 증거를 찾아가면서 기록화해 갔다. 한국 피해자의 경우, 한국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240명,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3명 중, 증언집, 증언록, 증언조사지 중 한 가지라도 있는 피해자는 102명 정도이다. 이 증언의 자료들은 일본제국의 공식사료가 기록해 내지 않은 것들을 기억하고 기록해간 자료이다. 식민지의 피지배자, 피해자의 역사를 연구할 때는 제국의 언어로 만들어진 '공식 사료'와 체현적으로 만들어진 식민지배의 기억, 증언, 구술이라는 또 다른 사료가 완전한 역사를 만들어 낸다. 그러나 일본제국은 자신들이 만든 공식기록 속에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우익은 군인에게 끌려갔다는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한다. 1930년대 말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 군인이 민간인을 직접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공문서'를 근거로 한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군에 끌려가는 "처녀공출"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처녀공출"은 실제였고, 그 실체는 제국의 기록이 아니라 식민지의 기억으로 이어져 왔다. 피해자들의 기억은 그것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일례로 노청자를 통해 그의 기억이 어떻게 복원되어 기록되는지, '실체'를 증명하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²⁴⁾

노청자의 구술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을 때, 초기 '위안부'를 어떻게 동원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

22) 한혜인, 「'황국'의 신민에서 '자학'의 국민으로:자유주의사관의 근원」, 문화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4.8.19

23) 佐藤健生, ドイツの戦後補償に学ぶ- (過去の克服) -8日独の「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1-ドイツの「強制売春」問題と日本の「従軍慰安婦」問題, 法學セミナー (463), p22-25, 1993-07.

24) 한혜인, 「일본군 '위안부' 증언의 발굴과 해제사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발굴 및 해제사업』, 2017년, 여성가족부 (비공개 자료). 여기에 실린 노청자 해제를 전체 인용한다.

기하면, 조선주둔군이 전장에 참전하면서 가는 길에 군인과 헌병이 직접 트럭에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싣고 끌고 갔다는 실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노청자는 김학순의 공개증언 이후 제소된 1991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²⁵⁾의 제2차 원고로 참가해, 1992년 4월 제출한 ①「소장」에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을 남겼다. 두 번째 구술기록은 1992년 일본의 사진기자 이토 다카시가 조사한 ② 『(증언) 중군위안부, 여성근로정신대』(1992년 8월 간행)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²⁶⁾ 세 번째 구술기록은 1992년 8월21일 한국정신대연구소의 ③이상화와 오쿠야마 요코가 조사한 녹취록이 있다.²⁷⁾ 네 번째 구술기록으로는 2002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의 연구원 김은경·박정애가 새롭게 조사한 연구보고 2002-16 ④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에 실려 있다.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앞의 연구팀이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2004. 여성과인권)를 편찬했다. ①②③의 내용은 1992년 노청자가 72세 때 구술한 것이고, ④는 10년 후인 82세 때 이루어진 것이다. ④를 조사한 조사자는 당시 노청자가 치매초기 상태에 있었다고 기술했다. ①②③의 내용과 ④의 내용 중 가장 다른 것은 앞의 ①②③의 구술내용에는 지명, 당시 주변상황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구술되어 있고, ④의 내용은 위안부의 생활 쪽의 구술이 상세하다.

노청자는 대전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1937년 군인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의 피해를 입었다. 노청자는 끌려간 곳이 증언④에서는 '일본놈들 땅'이라고 구술하고 있지만, ①에서는 타이카친, ②에서는 타이카친, ③에서는 한국어로는 태원(太原), 일본어로 타이카친으로 구술하고 있다. 노청자는 모든 구술에서 끌려간 곳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갔는데 부대는 저 마작 있고 위안부는 여가 있단 말이여 (중략) 들우다 보니께 말, 마방간", "말덜 매놔어"라고 말이 함께 있다는 것을 구술했다. 노청자가 타이젠까지는 군인들과 함께 '뚜껑없는 열차'를 타고 갔다고 하고 있다. 열차에서 내려 트럭을 타고 3.4시간 가면 오테산(五台山)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노청자의 ③의 구술내용을 보면, 타이젠으로 이동 중에 전투를 만나 기차 바퀴 밑으로 피신했다고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다. 타이젠은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도시로 성곽도시이다. 타이젠과 오테산은 1937년 9월부터 11월까지 일본의 북지방면군과 관동군부대가 타이젠 작전을 펼친 지역이다. 타이젠 작전에 파병된 조선군 제20사단의 작전일지와 제20사단 기밀작전일지를 보면 1937년 7월 기병(騎兵)을 출전하고²⁸⁾,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 희생자 보상청구소송>의 제2차 원고

①

「소장」에 자신의 일본군 '위안부' 경험을 남김

②

『(증언) 중군위안부, 여성근로정신대』(1992년 8월 간행)에 수록

③

이상화와 오쿠야마 요코가 조사한 녹취록

④

연구원 김은경·박정애가 새롭게 조사한 연구보고 2002-16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25) 김학순을 비롯한 피해자 9명과 군인 군속 피해자와 함께 한 소송. 1991년 12월 6일 동경지방법재판소에 제소하여 2001년 3월 26일에 동경재판에서 청구기각. 2003년 7월 22일 동경고등재판소에 청구기각되었고, 2004년 11월 29일 최고재판소에 상고 기각 판결. 지방재판소 판결은 사실인정을 했지만 법적 주장은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재판소에서는 강제노동조약 위반 추업조약 위반등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고 일본정부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국가무담책의 법리에 관해서도 "현행합법하에서는 정당성,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등재판소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했지만, 청구는 기각되었다.

26) 盧清子, 「結婚式の直前, 「慰安婦」に」(伊藤孝司, 『<証言>從軍慰安婦・女性勤勞挺身隊』, 風媒社, 91-98)

27) 이 조사의 녹취록은 2015년 여성가족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자료 및 체계적 분류관리 사업"의 결과물 『Ⅲ. 2015년 일본군 위안부 증언녹취록 피해자 9인 증언자료 (2)』에 실려있으나, 아직 비공개 상태이다.

28) 「第20師團機密作戰日誌 昭和12年7月12日~12年12月31日 1/2部中」C11111040000, 第20師團機密作戰日誌 昭和12年7月(1) C11111040200

1938년에는 400마리의 말을 수송할 계획도 하고 있다.²⁹⁾ 노청자의 기억과 공식사료가 말하는 것이 일치하고 있다. 타이겐 작전에는 조선주둔군 중 제20사단이 참전했다.³⁰⁾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제20사단이 타이겐 지역으로 진군했다. 제20사단 사령부는 경성에 있고, 제20보병단 사령부, 보병제 78연대, 79연대는 경성에 주둔하고 있었다.³¹⁾ 따라서 제3대대가 타이겐 작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1937년 대전을 출발하게 된다. 노청자는 이 시기 대전에서 같은 마을에 있던 한 여자와 함께 군인들이 타고 있는 트럭에 같이 타고 38명이 같이 타이겐으로 끌려가게 된다.

노청자가 끌려갈 때의 시기 및 상황에 대한 구술이 구체적인 것은 ③이다. 노청자가 끌려가게 된 시기는 열일곱 살 늦은 3월 씨앗을 심을 때였다. 밭일을 하던 어머니가 집에 밥을 가지러 갔다가 ③“군인들이 색시를 잡아간다”고 하면서 산 중의 고모네 집으로 피신하라고 하면서 험레벌떡 왔다. 노청자는 고모네 집으로 넘어가다가 군인 10명, 헌병 1명에게 붙들려 한 5리 정도 가니, 포장이 쳐진 트럭이 3대가 있었다. 트럭 안에는 우는 소리가 나고, 트럭 두 대는 누렇게 군인들이 있었고, 헌병도 있었다. 같은 마을에서 온 다른 사람과 트럭에 올라 세어 보니 38명이 붙잡혀 있었다고 했다. 이것은 공식사료에서는 기록하지 않는 ‘사실’이다.

노청자는 위안소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타이겐의 위안소에 대해서는 독립 혼성제4여단의 병사도 구술했다. 장교용 위안소에는 일본인 여성, 하급병사용으로는 조선인, 중국인이 있는 위안소가 2개 있었다고 했다.³²⁾ 병사의 기억과 노청자의 기억이 일치하고 있다.

노청자의 구술을 분석해 보면,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는 일본의 우익의 비판과는 달리, 4가지의 구술이 서로 보완적이었다. 재판과 피해자 관정을 위해 구술한 ①②③은, 질문에 맞추어진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명확한 지명, 상황 설명 등으로 진술하였고, ④의 경우는 그때 당시의 느낌, 일상을 구술을 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조사자의 전공 및 조사태도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초기 피해사실을 강조할 때는 권번 경험과 위문단 경험과 같은 것은 소거하고 있었으나, ④에서는 구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로 된 ①③에서는 지명 및 단어 외에는 일본어를 구사하지 않고 있는데, ④에서는 당시 군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나 그때 군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일본어의 문장, 감성적 표현 등이 보다 더 구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는 구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역사를 기억해 내고, 그 기억해 낸 구술은 공식적 사료, 남성의 기억과 함께 “역사적 사실”로 기록된다.

노청자는 위안소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이 타이겐의 위안소에 대해서는 독립혼성제4여단의 병사도 구술했다. 장교용 위안소에는 일본인 여성, 하급병사용으로는 조선인, 중국인이 있는 위안소가 2개 있었다고 했다. 병사의 기억과 노청자의 기억이 일치하고 있다.

29) 運輸通信長官 渡邊右文, 「第20師團整備支那馬輸送に関する件」, 昭和13年8月10日 (1938/08/10), C04120494300

30) 戶部良一, 「朝鮮駐屯日本軍の實像」, 『日本の植民地支配と朝鮮社會』

31) 보병 제80연대의 경우 본대는 대구에 있지만, 제3대대는 대전에 주둔하고 있었다. 「大田歩兵第80連隊第3大隊に文庫設置の件」, 大正7年 (1918/01/01 - 1918/12/31), C03011032200. 「陸軍常備兵力II」http://kitabatake.world.coocan.jp/rikukaigun52.html

32) 『特集「慰安婦」100人の証言』 DAYS JAPAN 2007年6月号, p.16

젠더 유산으로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는 1930년대 말 일어난 전시여성폭력 사건이 남성권력이 지배하던 시기에 은폐되어 오다가, 1990년대 민주화에 따른 인권의식에 눈 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국가책임으로 느끼고 공개증언하고, 그에 공감한 세계 시민 사회가 여성인권을 회복하고 “정의롭게” 해결하기 위해 싸워온 역사이다.

그러나 기존 권력=일본정부=한국의 공적기록=남성=가해자는 아직도 '위안부'의 문제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배치하고자 한다. 그들의 공고한 권력이 필요로 할 때는 '황군을 위안하는 신민'으로, '민족의 수난'으로 불러내 시각화하고 정작 피해자(여성)의 목소리로 공공화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다. 아니, 지협적 문제를 끌어내 국가 개입이 공식사료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은폐를 도모해 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노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김학순이라는 피해자의 실체가 증명되었고, 관련 공식문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거나, 위안소 제도를 만드는데 일본의 군관헌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정부의 불법행위로 집약되는 “일본군관헌의 직접 강제연행”의 사실을 교묘히 은폐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와 아베에 의해 그 은폐는 제국이 생산한 '사료'의 부재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의 실체를 암묵적으로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프레임은 한국에서는 역으로 작용하여, 그들이 원하는 공식사료를 발굴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사료를 찾아내는 것이 커다란 뉴스가 되고 있다. 기존에 발굴되어 있는 사료를 새 발굴사료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가 생존해 그 실체를 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제하는 위안부의 동영상을 발굴했다는 것이 커다란 뉴스가 되는 아이러니도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본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적 사료'만이 진실을 말한다는 프레임을 더 강고히 할 따름이다. 이는 한국이 공적 기억을 만들어 가는데 역시 '위안부'를 '민족의 수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민족=남성=권력의 눈으로 시각화하는데 익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베가 말하는 “직접 강제연행을 적시한 사료”는 발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정할 만한 공적기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굴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네덜란드 전범재판 자료, 상하이특별시정부 경찰첩보자료, 시공간을 달리하는 '위안부'들의 공통된 증언과 같이 아무리 관련 사료를 제시해도 그들은 부정한다. '사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질서 안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간에 대립이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 중, 더 밝혀져야만 하는 역사적 사실은 없다. 이미, 모든 것은 밝혀져 있다. 다만, 일본이, 권력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국가=민족=남성=권력의 욕망에 맞서 싸우면서 자신들의 억압되어 왔던 기억을 복원하고 기록해 갔다. 그 기억의 복원은 권력의 공식기록과 남성의 기억과 일치시키고 공식화해 가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은폐하려는 폭력의 '사실'을 증명해 나갔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위안부'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일어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을 나타내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은 일본제국이 생산해낸 공문서 뿐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의 기억과 증언, 그들이 자신의 피해를 깨닫고 극복해 가는 과정에 생산된 모든 관련 자료,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연대했던 시민들의 활동자료, 또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이 생산해낸 모든 기록이 역사를 이루는 구성요소다. 이 기록들은 한국도 포함한 국가=민족=남성=권력의 '시선'에서 벗어나, 피해자, 여성의 자신의 '목소리'로 재구축되어야 하는 젠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소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대학원에서 역사지역문화학(일본근현대사) 전공(박사)하였고, 국무총리소속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대통령소속 일제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지원 및 기념사업단 총괄팀장을 역임하였다. 논저로는 「총동원체제하 직업소개령과 일본군 '위안부' 동원-제국 일반과 식민지 조선의 차별적 제도운영을 중심으로」(사림, 2013),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사학연구, 2014) 등 다수가 있다.